

#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 기업의 원가 부담 증가

오 상 봉\*

## I. 서론

최근 몇 년간 4월이 되면 최저임금에 관한 기사가 언론의 주요 면에 빠짐없이 등장하고 있고, 금년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의 발언 이후 그 관심이 더욱 높아져 있다. 그런데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서 이해당사자에 따라서 관심사항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생계에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인지와 자신의 일자리를 잃을 가능성은 없는지에 관심을 가질 것이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자신의 사업에 얼마나 원가부담을 가중시킬 것인가에 관심을 가질 것이다. 정부 입장에서는 이 모든 이슈와 함께 국민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를 고려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업의 관심 사항에 대한 초보적인 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최근에 최저임금 인상이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이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sup>1)</sup>, 기존에 활발하게 분석이 이루어진 고용감소효과와 빈곤 완화효과에 대한 연구에 비해서는 연구 결과가 그리 많지 않은 실정이다. 고용조정이 아닌 최저임금의 다른 효과 중에 가격 인상은 Card and Krueger(1994)를 비롯한 많은 연구에서 고용조정에 대한 보조적인 연구결과로 제시된 이후 Aaronson(2008)과 Lee et al.(2000)과 같은 연구에서 본격적인 분석이 상당히 수행되었지만<sup>2)</sup>, 기업의 이윤 감소나 원가 부담 증가와 같은 주제에 대한 연구결과는 거의 없다. 다만 영국 저임금위원회는 이 주제에 꾸준히 관심을 가지면서 여러 차례의 연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논문으로 발표된 대표적 연구결과물로는 Draca et al.(2011)이 있다. 이들은 1999년 최저임금 도입의 영향을 더

\*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soh@kli.re.kr).

1) 최저임금이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 대해서는 Schmitt(2013)을 참고하기 바란다.  
2) 가격인상에 대한 연구결과에 대해서는 Lemos(2008)을 참고하기 바란다.

받는 기업과 덜 받는 기업을 구분하고 이중차분법을 적용하여 최저임금 도입의 영향을 더 받는 기업이 덜 받는 기업에 비해 이윤 감소가 크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즉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최저임금 도입 효과의 일부를 기업 이윤 감소로 흡수하였다는 것이다. 한편 Riley and Bondibene(2015)는 2015년에 저임금위원회에서 발표한 논문에서 이러한 기업 간의 이윤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으며, 이는 단지 다른 형태 기업들의 상이한 반응의 결과일 뿐이라고 지적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Draca et al.(2011)이나 Riley and Bondibene(2015)와 같은 정교한 분석을 수행하지 않고 최저임금 인상이 기업 원가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를 초보적인 수준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이윤 증감에는 매우 많은 요소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최저임금이 기업 이윤 증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매우 많은 요소를 고려해야 하고, 정교한 분석방법을 필요로 한다. 여기서는 이쉽지만 이러한 어려움을 우회하기 위해서 최저임금 인상 이 업종별로 기업의 상대적 인건비를 얼마나 높일지에 대한 시나리오 분석을 수행한다. 여기서는 지면 제약상 최저임금 인상률이 평균임금 인상률보다 0%에서 10%까지 높아지는 시나리오만 고려한다.

## II. 분석방법 및 가정

분석방법을 간단히 요약하자면, 먼저 최저임금 인상 시나리오별로 최저임금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인상되어야 할 각 개인들의 임금을 계산하고, 필요 인상액을 각 개인들의 종사 업종별로 합한 값을 현재 지급되는 업종별 임금 총액으로 나누어서 업종별 필요 임금 인상률을 계산한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임금 인상률 계산을 위해서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2014년 8월 부가조사를 이용하였다. 한편 한국은행의 기업경영분석 2013년 결과를 이용하여 업종별 기업의 원가 구조를 파악하였다. 여기서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기업의 부담 증가 정도를 보기 위해 판매 및 일반관리비 대비 인건비의 비중과 판매 및 일반관리비와 이자비용의 합 대비 인건비의 비중을 고려한다. 마지막으로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계산한 시나리오별 임금 인상률을 기업경영분석에 있는 인건비에 적용하여 인상될 인건비를 계산하고 기업의 인건비 비중이 얼마나 증가하였는지를 계산한다.

계산에는 여러 가지 가정이 전제되어 있으며 결과의 해석에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다. 먼저 당해 연도의 최저임금 인상이 반영되지 않은(당해 연도의 최저임금의 인상이 평균 임금 인상과 같을 경우의) 업종별 기업의 원가구조는 2013년의 원가구조와 거의 차이가

없다고 가정한다. 다른 경제적인 변화가 없다고 하더라도 최저임금 인상의 정도에 따라서 2013년에서 멀어질수록 원가구조는 조금씩 달라질 수밖에 없지만 단기적으로 이러한 가정이 크게 무리가 없을 것이라 판단된다. 업종별 기업들의 원가구조의 파악을 위해서 중소기업의 결과를 이용하였는데, 여기에는 업종별 기업들의 원가구조의 평균은 중소기업의 것과 같다는 가정이 필요하다. 법인기업만 보면 이러한 가정이 크게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된다. 관심이 있는 최저임금 미만이나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대규모 사업체의 비중은 1~3% 사이에 있고, 실제로 중소기업 법인과 대규모 법인의 업종별 원가구조에서 큰 차이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최저임금 미만이나 최저임금 수준을 지급하는 사업체의 절반 정도가 5인 미만 사업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가정이 비현실적일 수도 있을 것이다. 5인 미만 영세사업체가 법인의 형태를 띠고 있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이들의 원가구조가 중소기업 법인과 크게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다른 하나는 최저임금 인상이 반영되기 전(최저임금 인상이 평균임금 인상과 같을 경우)에 최저임금수준 대비 임금의 분포는 2014년 임금분포와 같다고 가정한다. 임금분포는 여러 가지 경제적 변화나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2014년에서 멀어질수록 2014년 분포와 달라질 것이다. 그러나 급격한 경제침체나 산업구조 변화와 같은 요인이나 최저임금의 급격한 변화가 없다면 단기적으로 크게 바뀌지 않을 것이라 기대된다.

이상의 가정을 종합하면, 최저임금 인상이 평균임금 인상과 같은 상태라면 특정연도에 원가구조는 2013년 기업경영분석의 결과와 같고 임금분포는 2014년 경제활동인구조사의 결과와 같은 상태가 된다. 이러한 상태에서 어떤 특정 연도에 최저임금이 평균임금보다 조금 더 오른다면, 추가적인 임금재원이 필요하고, 이는 기업의 원가부담을 가중시키게 된다. 물론 기업은 이러한 원가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한 여러 행태의 반응을 보일 것이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실제 부담은 여기에서 제시한 값보다 적을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본고의 결과는 기업의 행동을 고정시킨 상태에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추가적인 부담이므로 기업의 원가부담의 최대치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아래에서는 시간당 임금을 계산하는 방식에 따라 두 가지 다른 결과를 제시한다. 첫째는 단순히 월급여를 근무시간으로 나누어서 계산하는 통상적인 방법을 따랐다. 둘째는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고 소정근로시간 이상의 근무시간에 대해서는 초과근로수당을 제공하는 경우의 시간당 임금을 고려하였다. 경제활동인구조사에는 소정근로시간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주 40시간 이하를 일한 경우에는 실근로시간을, 40시간 이상 일한 경우에는 40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가정하였다. 5인 미만 사업체의 경우에는 44시간을 구분 기준으로 적용하였다.

계산 결과를 제시하기 전에 간단한 예로 결과가 어떻게 계산되었는지를 살펴볼 때, 최

저임금이 100원이고 산업 I에 종사자들의 급여가 다음과 같다고 하자.

a: 90원    b: 100원    c: 130원    d: 180원

산업 I의 인건비 총액은 500원이, 산업 I가 최저임금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2%의 인건비 인상이 필요하다.

$$[100-90]/500=10/500=0.02$$

만약 최저임금이 10%(110원) 인상된다면 6%의 인건비 인상이 필요하며, 현재 최저임금이 준수되고 있는 상황(a의 인건비가 100원)이더라도 4%의 인건비 인상이 필요하다.

$$[[110-90]+[110-100]]/500=30/500=0.06$$

산업 I의 원가구조가 다음과 같다고 하자.

판매 및 일반관리비: 500원    인건비: 200원<sup>3)</sup>

산업 I의 판매 및 일반관리비 중 인건비의 비중은 40%이며, 산업 I가 최저임금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0.8%의 인건비 비중 증가가 필요하다.

$$[200*[1+0.02]]/500=204/500=0.408$$

만약 최저임금이 10%(110원) 인상된다면 인건비 비중이 2.4% 증가하고, 현재 최저임금이 준수되고 있는 상황이라도 1.6%의 인건비 비중 증가가 필요하다.

$$[200*[1+0.06]]/500=212/500=0.424$$

### Ⅲ. 통상적인 시간당 임금 계산 방법에 따른 결과

<표 1>에는 업종별 임금근로자의 최저임금 대비 임금수준별 분포가 제시되어 있다. 임금근로자 비중이 높지 않은 농림어업과 가구 내 고용에서 최저임금 이하 및 저임금근로자 비중이 가장 높았다. 고용비중이 높은 업종 중에는 음식숙박업과 사업관리·지원업, 도소매업의 최저임금 이하 및 저임금근로자 비중이 높았다. 특히 음식숙박업에서는 최저임금 1.1배 이하를 받는 근로자의 비중이 76%에 이른다. 서비스업 중 고용비중이 가장 높은 도소매업에서 최저임금 1.1배 이하를 받는 근로자의 비중도 42%에 이른다. 고용비중이 높지 않은 부동산 및 임대서비스, 예술·스포츠·여가, 단체·수리·개인서비스업에서도 저임금근로자 비중이 높은 편이다. <표 1>에서는 어떤 배율의 상하 0.05배의 범위 내에 있는 근로자는 그 배율의 시간당 임금을 받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예를 들어 최저임

3) 위에서 제시된 산업 I의 인건비 총액과 여기에서의 인건비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위의 값은 산업 I 전체의 인건비 총액이지만, 여기의 인건비는 산업 I에 속한 중소기업의 인건비 총액이기 때문이다.

금보다 0.05배 적게 받는 근로자부터 0.05배 많이 받는 근로자까지 모두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로 간주하였다. 이는 경제활동인구조사에는 월급여가 만 원 단위로 조사가 되기 때문에 이를 이용한 시간당 임금이 부정확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표 1>에 제시된 임금근로자 분포는 임금 전체가 정액급여라고 가정하고 초과근로수당이나 주휴수당을 전혀 감안하지 않고 계산한 시간당 임금에 기초하고 있다. 초과근로수당이나 주휴수당을 고려하여 시간당 임금을 계산한 <표 5>를 보면 임금근로자 분포가 상당히 달라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초과근로수당이나 주휴수당만큼이나 중요한 요소가 상여금인데, 특히 전체 급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한 고정상여금의 고려 여부는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저임금 사업장에서 고정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노동 강도가 높은 제조업과 같은 일부 업종에는 여전히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자료의 제약으로 고정상여금 지급 여부까지 감안한 분포를 제

<표 1> 업종별 임금근로자의 분포

	최임 미만	최저 임금	1.1배	1.2배	1.3배	1.4배	1.5배	1.5배 이상
농·임·어업	40.4	6.3	14.3	20.8	5.8	6.6	2.5	3.4
광업	2.6	0.0	2.0	24.3	34.1	18.8	12.4	5.7
제조	4.2	2.4	12.5	21.8	19.3	20.8	9.9	9.1
전기·가스·수도	0.5	0.0	2.8	9.6	13.6	15.5	20.5	37.6
하수·폐기물	4.0	0.7	10.7	21.0	26.6	27.9	6.9	2.2
건설	5.0	1.9	15.5	27.5	20.8	18.7	5.9	4.5
도매·소매	14.1	5.9	21.8	24.7	13.3	10.8	4.8	4.6
운수	8.7	3.2	15.3	21.1	19.5	16.6	8.4	7.2
음식·숙박	27.3	15.0	33.8	15.9	4.3	2.2	1.0	0.4
출판·영상·통신	1.0	0.6	6.4	16.7	19.6	24.1	17.1	14.5
금융·보험	1.3	0.5	8.2	14.2	18.6	22.1	16.0	19.2
부동산·임대	18.6	6.2	19.4	23.3	12.7	12.8	4.0	2.9
전문·과학·기술	2.2	0.8	5.6	14.6	14.8	23.3	16.9	21.7
사업관리·지원	18.0	6.5	26.9	27.9	10.6	7.0	2.0	1.2
공공행정	8.6	6.3	8.0	8.9	9.8	21.6	22.0	14.7
교육	4.0	3.1	12.1	18.2	15.6	17.8	14.3	15.1
보건·복지	7.5	8.7	23.1	28.8	15.2	9.6	3.5	3.6
예술·스포츠·여가	19.5	5.7	23.0	19.9	11.4	14.8	3.5	2.3
단체·수리·개인	19.0	6.3	22.7	24.1	13.5	9.7	2.7	2.0
가구 내	51.4	7.9	22.7	13.6	3.7	0.7	0.0	0.0
외국기관	0	0	19.1	9.6	39.7	17.0	14.6	0.0

시할 수는 없지만, 제조업과 같은 업종에서는 고정상여금을 고려하면 분포가 다소 달라질 수도 있다는 점에 주의하기 바란다.

<표 2>에는 최저임금이 평균임금보다 크게 인상되는 시나리오별 인건비 증가율이 나와 있다. 첫 번째 열에서는 최저임금 준수를 위해 필요한 인건비 증가율이 나와 있다. 예를 들어 음식숙박업에 속한 모든 사업체가 최저임금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인건비를 4.27% 더 부담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고용비중이 높은 업종 사업관리·지원업, 도소매업 등에서도 최저임금 준수를 위해서는 상당한 인건비 증가율을 감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고용비중이 높지는 않지만 예술·스포츠·여가 및 단체·수리·개인서비스업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위해서 필요한 인건비 증가율이 매우 높은 편이다.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의 비중에서 큰 차이가 없었던 농림어업과 가구 내 고용의 최저임금 준수를 위한

<표 2> 최저임금 인상 시나리오별 인건비 증가율

	최임 준수	+1% 인상	+2% 인상	+3% 인상	+4% 인상	+5% 인상	+6% 인상	+7% 인상	+8% 인상	+9% 인상	+10% 인상
농·임·어업	9.20	0.26	0.52	0.78	1.05	1.32	1.60	1.88	2.16	2.45	2.74
광업	0.16	0.00	0.01	0.01	0.02	0.02	0.03	0.03	0.04	0.04	0.05
제조	0.43	0.02	0.04	0.06	0.08	0.11	0.13	0.15	0.18	0.21	0.23
전기·가스·수도	0.05	0.00	0.00	0.00	0.01	0.01	0.01	0.01	0.01	0.01	0.02
하수·폐기물	0.39	0.02	0.04	0.06	0.09	0.11	0.13	0.15	0.17	0.19	0.22
건설	0.50	0.03	0.06	0.09	0.12	0.15	0.18	0.21	0.24	0.27	0.31
도매·소매	1.93	0.08	0.16	0.24	0.33	0.42	0.50	0.60	0.69	0.78	0.88
운수	1.13	0.05	0.10	0.16	0.21	0.27	0.33	0.39	0.45	0.50	0.57
음식·숙박	4.27	0.26	0.53	0.80	1.08	1.37	1.66	1.96	2.27	2.58	2.90
출판·영상·통신	0.07	0.00	0.01	0.01	0.01	0.02	0.02	0.02	0.03	0.03	0.04
금융·보험	0.09	0.00	0.01	0.01	0.02	0.02	0.03	0.03	0.04	0.04	0.05
부동산·임대	3.09	0.13	0.27	0.41	0.55	0.69	0.84	1.00	1.15	1.31	1.46
전문·과학·기술	0.12	0.01	0.01	0.02	0.03	0.03	0.04	0.05	0.06	0.07	0.07
사업관리·지원	3.03	0.16	0.31	0.48	0.64	0.80	0.97	1.14	1.32	1.49	1.67
공공행정	0.46	0.02	0.04	0.06	0.09	0.11	0.13	0.16	0.18	0.21	0.23
교육	0.36	0.02	0.03	0.05	0.07	0.08	0.10	0.12	0.14	0.16	0.18
보건·복지	0.78	0.05	0.10	0.15	0.20	0.25	0.30	0.36	0.42	0.48	0.54
예술·스포츠·여가	2.03	0.11	0.23	0.35	0.47	0.60	0.73	0.87	1.01	1.15	1.28
단체·수리·개인	3.26	0.14	0.28	0.42	0.57	0.72	0.87	1.03	1.19	1.35	1.51
가구 내	23.98	0.66	1.33	2.00	2.68	3.36	4.05	4.75	5.45	6.15	6.86
외국기관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인건비 증가율은 큰 차이를 보이는데, 이는 가구 내에 종사하는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이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에 비해 최저임금의 차가 더 크다는 것을 시사한다.

두 번째 열부터는 최저임금이 준수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 시나리오별로 인건비 증가율이 나와 있다. 예를 들어 최저임금이 평균임금보다 3%만큼 더 증가할 경우에 음식숙박업에 속한 기업들의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추가적인 인건비 부담은 0.80% 더 높아진다. 대체로 <표 1>에서 1.1배에 속한 근로자의 비중이 높은 업종의 인건비 증가율이 큰 편이다. 다만 1.1배에 속한 근로자의 분포에 따라서 부담의 정도에 차이는 발생한다. 주요 업종 중에 음식숙박업 다음으로 인건비 증가율이 높은 업종으로 사업관리·지원업과 도소매업을 들 수 있다. 취업자 수가 그리 많지는 않지만 부동산 및 임대업, 예술·스포츠·여가관련 서비스업, 단체·수리·개인서비스업에서도 인건비 증가율이 상당히 높다. 가구 내 고용이나 농림어업의 인건비 증가율도 매우 높다. 이에 반해 제조업, 보건복지업, 교육업, 공공행정, 금융보험업,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등에서 인건비 증가율은 낮은 편이다.

통상적으로 최저임금이 평균임금에 비해 0~5% 정도 더 인상되었다는 점을 감안하여 5% 인상 시나리오만 본다면, 주요 업종 중에는 음식숙박업을 제외하고 인건비 인상률이 1%를 넘는 업종은 없다. 도소매업과 사업관리·지원업이 0.42%와 0.80%로 조금 높지만, 제조업과 교육업은 0.11%와 0.08%밖에 되지 않는다.

<표 3>에는 최저임금이 평균임금보다 크게 인상되는 시나리오별 판매 및 일반관리비 대비 인건비 비중 증가율이 나와 있다. 첫 번째 열에는 업종별 인건비 비중이 나와 있다. 사업관리·지원의 인건비 비중은 매우 높으며, 운수업이나 예술·스포츠·여가는 낮은 편이다. 두 번째 열에는 최저임금 준수를 위해 필요한 인건비 비중 증가율이 나와 있다. 사업관리·지원업과 음식숙박업의 경우 최저임금 준수를 위해서 상당한 인건비 비중 증가가 필요한 것을 알 수 있다. 도소매업도 상당히 높은 편이다. 세 번째 열부터는 최저임금이 준수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 시나리오별로 인건비 비중 증가율이 나와 있다.

당연한 결과이지만 인건비 증가율이 높은 업종에 인건비 비중 증가율도 높다. 다만 인건비 비중이 높은지 낮은지에 따라서 차이가 발생한다. 인건비 비중이 비슷한 제조업, 도소매업, 음식숙박업을 보면, 인건비 비중 증가율은 <표 2>의 인건비 증가율과 비슷한 차이를 보인다. 그런데 인건비 증가율이 비슷한 예술·스포츠·여가와 단체·수리·개인업은 인건비 비중이 크게 달라 인건비 비중 증가율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인건비 비중이 높은 단체·수리·개인의 인건비 비중 증가율이 훨씬 높다. 주요 업종 중에는 음식숙박업과 인건비 비중이 높은 사업관리·지원업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비중이 빠르게 증가한다. 최저임금이 평균임금보다 5%로 더 인상될 경우에 음식숙박업의 인건비

<표 3> 최저임금 인상 시나리오별 판매 및 일반관리비 대비 인건비 비중 증가율

	인건비 비중	최임준 수	+1% 인상	+2% 인상	+3% 인상	+4% 인상	+5% 인상	+6% 인상	+7% 인상	+8% 인상	+9% 인상	+10% 인상
농·임·어업	31.9	2.47	0.07	0.14	0.21	0.28	0.35	0.43	0.50	0.58	0.66	0.73
광업	30.9	0.04	0.00	0.00	0.00	0.00	0.01	0.01	0.01	0.01	0.01	0.01
제조	44.1	0.15	0.01	0.01	0.02	0.03	0.04	0.05	0.06	0.06	0.07	0.08
전기·가스·수도	25.8	0.01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하수·폐기물	42.3	0.14	0.01	0.02	0.02	0.03	0.04	0.05	0.05	0.06	0.07	0.08
건설	53.9	0.22	0.01	0.03	0.04	0.05	0.07	0.08	0.09	0.11	0.12	0.14
도매·소매	41.3	0.67	0.03	0.06	0.08	0.11	0.14	0.18	0.21	0.24	0.27	0.31
운수	28.6	0.27	0.01	0.02	0.04	0.05	0.06	0.08	0.09	0.11	0.12	0.14
음식·숙박	44.5	1.68	0.10	0.21	0.31	0.43	0.54	0.65	0.77	0.89	1.02	1.14
출판·영상·통신	40.5	0.02	0.00	0.00	0.00	0.00	0.01	0.01	0.01	0.01	0.01	0.01
금융·보험	NA											
부동산·임대	34.3	0.90	0.04	0.08	0.12	0.16	0.20	0.25	0.29	0.34	0.38	0.43
전문·과학·기술	47.9	0.05	0.00	0.01	0.01	0.01	0.01	0.02	0.02	0.02	0.03	0.03
사업관리·지원	67.6	1.84	0.09	0.19	0.29	0.39	0.49	0.59	0.69	0.80	0.90	1.01
공공행정	NA											
교육	39.6	0.12	0.01	0.01	0.02	0.02	0.03	0.03	0.04	0.05	0.06	0.06
보건·복지	NA											
예술·스포츠·여가	29.9	0.49	0.03	0.06	0.08	0.11	0.14	0.18	0.21	0.24	0.28	0.31
단체·수리·개인	47.7	1.33	0.06	0.11	0.17	0.23	0.29	0.35	0.42	0.48	0.55	0.62
가구 내	NA											
외국기관	NA											
전 체	44.3	0.47	0.02	0.04	0.07	0.09	0.11	0.14	0.16	0.19	0.22	0.24

비중은 0.54%, 사업관리·지원업은 0.49% 증가한다. 도소매업도 0.14% 증가한다.

마지막 행에 있는 합계는 계산이 가능한 업종들의 판매 및 일반관리비와 인건비의 합계를 이용하여 계산한 값이다. 아쉽지만 기업경영분석에 금융보험업, 공공행정, 보건복지업, 가구 내 고용, 외국기관에 대한 원가 자료가 제공되지 않아 인건비 비중을 계산할 수 없었다. 가구 내 고용은 고용 비중이 매우 낮고, 금융보험업과 공공행정의 경우 저임금 비율이 높지 않아 이들 업종을 제외한 결과로 전체적인 인건비 비중을 보는 것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이라 판단된다.<sup>4)</sup>

<표 4>에는 판매 및 일반관리비 대비 인건비 비중 증가율이 아닌 판매 및 일반관리비와 이자비용의 합 대비 인건비 증가율을 제시하고 있다. 분모가 커졌기 때문에 <표 4>에 인건비 비중은 <표 3>의 값보다 낮다. 이자비용이 많이 드는 업종일수록 변화가 크다.

4) 다만, 고용비중이 높은 보건복지업이 빠진 것이 전체적인 인건비 비중을 약간 왜곡할 여지는 남아 있다.

<표 4> 최저임금 인상 시나리오별 판매 및 일반관리비와 이자비용의 합 대비 인건비 비중 증가율

	인건비 비중	최임 준수	+1% 인상	+2% 인상	+3% 인상	+4% 인상	+5% 인상	+6% 인상	+7% 인상	+8% 인상	+9% 인상	+10% 인상
농·임·어업	27.5	2.13	0.06	0.12	0.18	0.24	0.31	0.37	0.43	0.50	0.57	0.63
광업	26.4	0.03	0.00	0.00	0.00	0.00	0.00	0.01	0.01	0.01	0.01	0.01
제조	39.4	0.14	0.01	0.01	0.02	0.03	0.03	0.04	0.05	0.06	0.07	0.07
전기·가스·수도	16.7	0.01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하수·폐기물	38.8	0.13	0.01	0.01	0.02	0.03	0.04	0.04	0.05	0.06	0.06	0.07
건설	50.0	0.21	0.01	0.02	0.04	0.05	0.06	0.07	0.09	0.10	0.11	0.13
도매·소매	39.6	0.65	0.03	0.05	0.08	0.11	0.14	0.17	0.20	0.23	0.26	0.29
운수	27.2	0.26	0.01	0.02	0.04	0.05	0.06	0.07	0.09	0.10	0.12	0.13
음식·숙박	41.7	1.57	0.09	0.19	0.29	0.40	0.50	0.61	0.72	0.84	0.95	1.07
출판·영상·통신	39.6	0.02	0.00	0.00	0.00	0.00	0.01	0.01	0.01	0.01	0.01	0.01
금융·보험	NA											
부동산·임대	25.8	0.68	0.03	0.06	0.09	0.12	0.15	0.18	0.22	0.25	0.29	0.32
전문·과학·기술	47.1	0.05	0.00	0.01	0.01	0.01	0.01	0.02	0.02	0.02	0.03	0.03
사업관리·지원	67.2	1.83	0.09	0.19	0.29	0.39	0.48	0.59	0.69	0.79	0.90	1.01
공공행정	NA											
교육	37.6	0.12	0.01	0.01	0.02	0.02	0.03	0.03	0.04	0.05	0.05	0.06
보건·복지	NA											
예술·스포츠·여가	25.2	0.41	0.02	0.05	0.07	0.10	0.12	0.15	0.18	0.20	0.23	0.26
단체·수리·개인	46.2	1.29	0.05	0.11	0.17	0.23	0.28	0.34	0.41	0.47	0.53	0.60
가구 내	NA											
외국기관	NA											
전 체	41.4	0.44	0.02	0.04	0.06	0.08	0.11	0.13	0.15	0.18	0.20	0.23

<표 4>의 값은 전반적으로 <표 3>과 비슷하다. 이자비용을 고려한 이유는, 이자비용은 영업외 비용이라서 판매 및 일반관리비에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사실상 영업활동을 위해 필요한 장비나 임대보증금의 확보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이므로 사실상 자본재 이용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볼 수 있으며, 노동비용 증가 정도를 고려할 때 포함해서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 IV. 시간당 임금에 주휴수당과 초과근로수당을 고려한 결과

여기서는 주휴수당과 초과근로수당을 고려한 시간당 임금을 기준으로 한 월가 부담 증가 정도를 추정된 결과를 제시한다. 경제활동인구조사에는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앞에서 설명한 기준에 따라 초과근로수당과 주휴수당을 감안하였다.

<표 5> 업종별 임금근로자의 분포

	최임 미만	최저 임금	1.1배	1.2배	1.3배	1.4배	1.5배	1.5배 이상
농·임·어업	50.4	6.2	20.9	9.7	4.9	4.3	2.2	1.5
광업	4.6	0.0	14.3	35.5	17.7	22.1	3.0	2.7
제조	9.8	4.5	16.4	23.7	18.1	17.1	6.1	4.3
전기·가스·수도	0.5	0.0	6.9	11.0	14.9	27.5	15.9	23.4
하수·폐기물	6.4	6.3	12.5	33.5	22.8	16.4	0.8	1.3
건설	10.6	5.1	23.0	26.6	16.8	12.6	3.8	1.5
도매·소매	26.0	9.3	20.9	19.8	10.1	8.6	3.4	1.9
운수	16.4	6.2	17.2	22.8	15.1	13.8	6.0	2.4
음식·숙박	54.8	14.0	18.4	8.0	2.7	1.4	0.4	0.2
출판·영상·통신	3.5	2.0	9.3	23.8	19.6	25.3	10.4	6.1
금융·보험	4.4	1.1	12.5	19.8	17.4	23.6	11.8	9.5
부동산·임대	30.7	7.1	18.8	18.4	11.8	9.6	1.5	2.2
전문·과학·기술	4.0	1.7	10.5	17.1	17.3	25.4	13.8	10.1
사업관리·지원	30.9	9.9	27.6	18.8	7.0	4.4	1.1	0.3
공공행정	12.9	5.9	7.9	10.1	16.5	28.6	13.3	4.8
교육	9.2	3.8	15.6	18.4	14.5	21.2	10.3	7.0
보건·복지	16.5	12.8	26.1	23.5	10.0	7.0	2.0	2.1
예술·스포츠·여가	32.3	9.0	19.3	15.1	11.7	10.4	1.9	0.4
단체·수리·개인	31.3	7.4	22.6	20.3	9.3	6.6	1.6	1.0
가구 내	69.3	8.4	11.1	9.4	1.8	0.0	0.0	0.0
외국기관	0.0	0.0	0.0	26.0	21.4	38.1	14.6	0.0

주휴수당과 초과근로수당을 고려하여 시간당 임금을 계산하였기 때문에 <표 5>에 나와 있는 임금근로자의 분포는 <표 1>과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업종별로 편차는 있지만 최저임금 미만의 비중이 크게 높아지고 최저임금보다 훨씬 더 많은 임금을 받는 근로자의 비중은 줄어든다. 특히 <표 1>에서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의 비중이 높았던 음식숙박업과 사업관리·지원업과 도소매업의 최저임금 미만 비율이 두 배 가까이 높아졌으며, 음식숙박업에서 최저임금 수준이나 최저임금의 1.1배를 받는 근로자의 비중은 낮아졌다.

<표 5>에 제시된 음식숙박업이나 사업관리·지원업, 도소매업 등의 최저임금 이하 근로자 비율이 <표 1>에 비해 상당히 높기 때문에 <표 6>에 제시된 바와 같이 초과근로수당과 주휴수당 고려 시 최저임금 준수를 위해 필요한 인건비 인상률은 <표 2>에 비해 높다. 특히 음식숙박업의 경우 10%를 상회한다. 특이한 것은 최저임금이 준수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 시나리오별 추가 인건비 인상 요구 비율에 있어서 <표 6>의 값이 전반적으로 <표 2>의 값보다 높다. 초과근로수당과 주휴수당을 감안하여 최저임금 이하 비율이 높아지면서 최저임금보다 조금 높은 근로자 비율이 낮아진 업종의 경우에는 필요

〈표 6〉 최저임금 인상 시나리오별 인건비 증가율

	최임 준수	+1% 인상	+2% 인상	+3% 인상	+4% 인상	+5% 인상	+6% 인상	+7% 인상	+8% 인상	+9% 인상	+10% 인상
농·임·어업	15.57	0.39	0.78	1.18	1.58	1.99	2.40	2.81	3.23	3.65	4.06
광업	0.32	0.01	0.03	0.04	0.06	0.07	0.08	0.10	0.11	0.13	0.14
제조	1.20	0.06	0.12	0.18	0.24	0.31	0.38	0.45	0.52	0.59	0.66
전기·가스·수도	0.09	0.00	0.00	0.01	0.01	0.01	0.01	0.01	0.02	0.02	0.02
하수·폐기물	1.04	0.05	0.11	0.17	0.23	0.28	0.34	0.41	0.48	0.55	0.62
건설	1.45	0.07	0.13	0.21	0.28	0.36	0.44	0.52	0.60	0.69	0.78
도매·소매	4.42	0.18	0.37	0.56	0.75	0.95	1.16	1.37	1.58	1.79	2.02
운수	3.15	0.12	0.23	0.36	0.48	0.61	0.75	0.89	1.03	1.18	1.33
음식·숙박	13.06	0.60	1.21	1.83	2.45	3.09	3.74	4.40	5.06	5.74	6.42
출판·영상·통신	0.20	0.01	0.03	0.04	0.06	0.07	0.09	0.10	0.12	0.14	0.16
금융·보험	0.27	0.02	0.03	0.05	0.07	0.09	0.11	0.13	0.15	0.16	0.18
부동산·임대	7.84	0.27	0.55	0.83	1.12	1.41	1.71	2.00	2.30	2.60	2.90
전문·과학·기술	0.31	0.02	0.03	0.05	0.06	0.08	0.10	0.12	0.13	0.15	0.17
사업관리·지원	8.09	0.30	0.61	0.93	1.26	1.58	1.92	2.26	2.61	2.95	3.31
공공행정	0.91	0.04	0.08	0.12	0.16	0.20	0.24	0.28	0.33	0.37	0.41
교육	0.84	0.04	0.08	0.12	0.17	0.21	0.25	0.30	0.35	0.40	0.44
보건·복지	2.35	0.12	0.25	0.39	0.53	0.68	0.83	0.98	1.14	1.30	1.46
예술·스포츠·여가	5.47	0.24	0.49	0.75	1.00	1.26	1.53	1.79	2.06	2.33	2.60
단체·수리·개인	7.55	0.27	0.55	0.83	1.11	1.39	1.67	1.97	2.26	2.56	2.86
가구 내	39.63	1.01	2.03	3.05	4.07	5.11	6.15	7.19	8.24	9.29	10.35
외국기관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한 인건비 증가율은 낮아져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 대표적으로 음식숙박업이 그러하다. 이러한 결과는 시간당 임금에 초과근로수당과 주휴수당을 감안한 이후에 최저임금보다 조금 높은 근로자가 최저임금에 매우 가까운 쪽에 더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는 것이 한 원인이다. 최저임금이 높아질수록 최저임금에 매우 가까이 분포된 임금근로자들이 인건비 인상에 누적적으로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 한 가지 이유는 초과근로수당을 고려할 경우 최저임금의 인상의 효과가 증폭되기 때문이다. 초과근로수당을 고려하지 않을 때는 최저임금 인상은 모든 근로시간에 똑같이 영향을 미치지만, 초과근로수당을 고려할 경우 초과근로시간 부분에 대해서는 1.5배의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과로 최저임금이 평균임금보다 5% 높게 인상될 경우 음식숙박업과 사업관리·지원업, 도소매업

에 필요한 인건비 비중 증가율은 3.09%, 1.58%, 0.95%이다. 경제 전체적으로는 0.26%만큼 인건비 비중이 높아진다.

<표 7>의 결과는 <표 6>의 연장선상에서 볼 수 있다. <표 6>에 있는 최저임금 준수에 필요한 인건비 인상률과 최저임금 준수 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필요 인건비 인상률이 모두 <표 2>에 있는 값보다 크기 때문에 <표 7>에 있는 판매 및 일반관리비 대비 인건비 증가율도 <표 3>의 값보다 크다. 음식숙박업과 사업관리·지원업, 도소매업의 경우에 최저임금 준수를 위해서 5.13%, 4.90%, 1.54%의 인건비 비중의 증가가 필요하다. 최저임금이 준수되고 있는 상태에서 최저임금 증가율이 평균임금 증가율보다 5% 높을 경우 음식숙박업과 사업관리·지원업, 도소매업의 인건비 비중은 1.21%, 0.96%, 0.33%이 증가할 것이다.

<표 7> 최저임금 인상 시나리오별 판매 및 일반관리비 대비 인건비 비중 증가율

	인건비 비중	최임 준수	+1% 인상	+2% 인상	+3% 인상	+4% 인상	+5% 인상	+6% 인상	+7% 인상	+8% 인상	+9% 인상	+10% 인상
농·임·어업	31.9	4.17	0.11	0.21	0.32	0.42	0.53	0.64	0.75	0.87	0.98	1.09
광업	30.9	0.08	0.00	0.01	0.01	0.01	0.02	0.02	0.02	0.03	0.03	0.03
제조	44.1	0.43	0.02	0.04	0.06	0.09	0.11	0.14	0.16	0.19	0.21	0.24
전기·가스·수도	25.8	0.02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하수·폐기물	42.3	0.37	0.02	0.04	0.06	0.08	0.10	0.12	0.15	0.17	0.20	0.22
건설	53.9	0.65	0.03	0.06	0.09	0.13	0.16	0.20	0.23	0.27	0.31	0.35
도매·소매	41.3	1.54	0.06	0.13	0.19	0.26	0.33	0.40	0.48	0.55	0.63	0.70
운수	28.6	0.75	0.03	0.06	0.09	0.12	0.15	0.18	0.21	0.25	0.28	0.32
음식·숙박	44.5	5.13	0.24	0.47	0.72	0.96	1.21	1.47	1.73	1.99	2.26	2.52
출판·영상·통신	40.5	0.07	0.00	0.01	0.01	0.02	0.02	0.03	0.03	0.04	0.05	0.05
금융·보험	NA											
부동산·임대	34.3	2.29	0.08	0.16	0.24	0.33	0.41	0.50	0.58	0.67	0.76	0.84
전문·과학·기술	47.9	0.13	0.01	0.01	0.02	0.03	0.03	0.04	0.05	0.05	0.06	0.07
사업관리·지원	67.6	4.90	0.18	0.37	0.57	0.76	0.96	1.16	1.37	1.58	1.79	2.01
공공행정	NA											
교육	39.6	0.29	0.01	0.03	0.04	0.06	0.07	0.09	0.10	0.12	0.14	0.15
보건·복지	NA											
예술·스포츠·여가	29.9	1.32	0.06	0.12	0.18	0.24	0.30	0.37	0.43	0.50	0.56	0.63
단체·수리·개인	47.7	3.08	0.11	0.22	0.34	0.45	0.57	0.68	0.80	0.92	1.04	1.17
가구 내	NA											
외국기관	NA											
전 체	44.3	1.20	0.05	0.10	0.15	0.20	0.26	0.31	0.37	0.42	0.48	0.54

<표 8>에는 초과근로수당과 주휴수당을 감안한 시간당 임금을 기준으로 할 때, 최저임금 인상 시나리오별 판매 및 일반관리비와 이자비용의 합 대비 인건비 비중 증가율이 나와 있다. 전체 비용에서 이자비용의 비중이 업종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 영향이 업종에 따라 차이가 나기는 하지만 그 차이는 크지 않다. <표 8>을 <표 7>과 비교해 볼 때 조금 차이가 나는 업종은 음식숙박업인데, 최저임금이 평균임금보다 5% 높게 인상될 경우 필요한 인건비 비중은 이자비용까지 고려할 때 1.21%에서 1.14%로 0.07%p 낮아진다.

<표 8> 최저임금 인상 시나리오별 판매 및 일반관리비와 이자비용의 합 대비 인건비 비중 증가율

	인건비 비중	최임 준수	+1% 인상	+2% 인상	+3% 인상	+4% 인상	+5% 인상	+6% 인상	+7% 인상	+8% 인상	+9% 인상	+10% 인상
농·임·어업	27.5	3.60	0.09	0.18	0.27	0.37	0.46	0.56	0.65	0.75	0.84	0.94
광업	26.4	0.07	0.00	0.01	0.01	0.01	0.01	0.02	0.02	0.02	0.03	0.03
제조	39.4	0.38	0.02	0.04	0.06	0.08	0.10	0.12	0.14	0.17	0.19	0.21
전기·가스·수도	16.7	0.01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하수·폐기물	38.8	0.34	0.02	0.04	0.06	0.07	0.09	0.11	0.13	0.16	0.18	0.21
건설	50.0	0.60	0.03	0.06	0.09	0.12	0.15	0.18	0.22	0.25	0.29	0.32
도매·소매	39.6	1.48	0.06	0.12	0.19	0.25	0.32	0.39	0.46	0.53	0.60	0.67
운수	27.2	0.72	0.03	0.05	0.08	0.11	0.14	0.17	0.20	0.24	0.27	0.30
음식·숙박	41.7	4.81	0.22	0.44	0.67	0.90	1.14	1.38	1.62	1.86	2.11	2.36
출판·영상·통신	39.6	0.07	0.00	0.01	0.01	0.02	0.02	0.03	0.03	0.04	0.05	0.05
금융·보험	NA											
부동산·임대	25.8	1.72	0.06	0.12	0.18	0.25	0.31	0.37	0.44	0.50	0.57	0.63
전문·과학·기술	47.1	0.12	0.01	0.01	0.02	0.03	0.03	0.04	0.05	0.05	0.06	0.07
사업관리·지원	67.2	4.87	0.18	0.37	0.56	0.76	0.95	1.16	1.36	1.57	1.78	1.99
공공행정	NA											
교육	37.6	0.27	0.01	0.03	0.04	0.05	0.07	0.08	0.10	0.11	0.13	0.14
보건·복지	NA											
예술·스포츠·여가	25.2	1.11	0.05	0.10	0.15	0.20	0.26	0.31	0.36	0.42	0.47	0.53
단체·수리·개인	46.2	2.98	0.11	0.22	0.33	0.44	0.55	0.66	0.78	0.89	1.01	1.13
가구 내	NA											
외국기관	NA											
전 체	41.4	1.12	0.05	0.09	0.14	0.19	0.24	0.29	0.34	0.40	0.45	0.50

## V. 결 론

본 연구는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서 사용자의 주요 관심사항인 기업부담 증가 정도를 강한 가정 하에서 추정해 보았다. 초과근로수당과 주휴수당을 고려하는지 여부에 따라 영향 정도는 약간 차이를 보이는데, 최저임금 인상률이 평균임금 인상률보다 5% 높을 경우 경제 전체적으로 판매 및 일반관리비 대비 인건비 비중이 초과근로수당과 주휴수당 고려 여부에 따라 0.11% 또는 0.26% 높아진다. 경제 전체적으로는 인건비 비중 증가가 크지 않지만 업종에 따라 영향 정도는 편차를 보이기 때문에 인건비 비중 증가도 업종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특히 음식숙박업과 사업관리·지원업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이 평균 임금 인상보다 5% 더 높으면 초과근로수당과 주휴수당 고려 여부에 따라 인건비 비중 0.54%와 0.49% 또는 1.21%와 0.96%로 높아진다. 0.5%에서 1% 사이의 인건비 비중 증가가 아주 커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기업의 경영상황에 따라서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특히 최저임금 준수를 위해서는 경제 전체적으로 0.47% 또는 1.20%의 인건비 비중 증가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0.5%와 1%의 인건비 비중 증가는 기업에 적은 부담이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된다.<sup>5)</sup> 최저임금 수준에서 임금을 지급하는 사업체에서 흔히 있는 일은 아니겠지만, 정기상여금을 지급하고 있을 경우에는 인건비 비중은 더 커질 수도 있다. 앞에서 언급한 바가 있지만, 여기에 제시된 값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사업주의 대응을 전혀 감안하고 있지 않고 나온 결과이기 때문에 이 값은 인건비 비중 증가의 최대치로 해석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기업의 부담 증가 정도를 추정할 때 여러 가지 강한 가정을 한 것은 본 연구의 가장 큰 한계이자 향후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모든 기업의 원가구조가 중소기업 법인과 같다고 가정한 것이 우선적으로 다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중소기업 법인과 대규모 법인의 원가구조가 비슷하다고 하더라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가장 크게 영향을 받을 영세 사업체의 원가구조가 중소기업 법인과 비슷할 것이라 단언하기는 힘들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가 남아 있는 초보적인 연구결과라는 점에 그 한계를 인정하고 향후 이러한 한계가 극복된 연구를 기대한다. **KLI**

5) 당연히 준수되어야 할 최저임금이 지켜지지 않은 것은 사업주의 과도한 이익추구 행위의 결과일 수도 있지만 경영여건이 좋지 않아 지켜지지 않는 경우도 상당히 있기 때문이라는 현실을 볼 때, 0.5%나 1%의 인건비 비중 증가는 영세사업주에게는 상당히 부담이 되는 수준이라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

**<참고문헌>**

- Card, David, and Alan Krueger(1994), “Minimum Wages and Employment: A Case Study of the Fast-Food Industry in New Jersey and Pennsylvania,” *American Economic Review* 84(4), pp.772~793.
- Draca, Mirko, Stephen Machin, and John Van Reenen(2011), “Minimum Wages and Firm Profitabilit,” *American Economic Journal: Applied Economics* 3, pp.129~151.
- Lee, Chinkook, Gerald Schluter, Brian O’Roark(2000), “Minimum Wage and Food Prices: An Analysis of Price Pass-through Effects,” *International Food and Agribusiness Management Review* 3, pp.111~128.
- Lemos, Sara(2008), “A Survey of the Effects of The Minimum Wage on Prices,” *Journal of Economic Surveys* 22(1), pp.187~212.
- Riley, Rebecca and Chiara Rosazza Bondibene(2015), “The Impact of the National Minimum Wage on UK Business,” Report to the Low Pay Commission.
- Schmitt, John(2013), “Why Does the Minimum Wage Have No Discernible Effect on Employment?”, Center for Economic and Policy Research.